#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심의 · 의결

의 안 번 호 제2023-213-250호

안 건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 결 연 월 일 2023. 6. 27.

## 주 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이 유

##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 피심인의 일반현황 >

피심	인명 사업	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종업원 수

##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유출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조사 ('22. 4. 5. ~ '23. 4. 6.)를 진행하여, 피심인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1. 행위 사실

# 가. 개인정보 수집 현황

피심인은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22.6.13.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고 있다.

개인정보파일	수집·이용 항목	수집기간	보유건수(명)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성별, 소속, 고객번호, 증권번호, 조합원 가입일	'21.3.18.~ '22.2.25.	1,924

####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 1) 유출 규모 및 항목

조합원 1,92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성별, 소속, 고객번호, 증권번호, 조합원 가입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2) 유출 인지 및 대응

일시		피심인의 유출 인지·대응 내용			
2022.	2. 14.	익명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 유출 정황을 피심인에게 제보, 자체 조사 착수			
	2. 15.	자체 조사 결과 개인정보(조합원 실태조사 명부) <b>유출 사실 최초 인지</b>			
	2. 16.	내부 부서 및 지사무소에 '개인정보 유출 금지' 공문 발송			
	2. 17.	지사무소 대상 '조합원 명부 파기 확인서' 징구			
	2. 18.	명부 유출본 1부 회수 / 조합원에게 유출정보 이용 금지 요청			
	2. 21.	유출 통지(1차 문자메시지) / 홈페이지 공지 / 개인정보 포털 유출 신고			
	2. 22.	유출 통지(2차 우편)			
	3. 2.	경찰서에 유출 관련자 형사 고발			

## 3) 유출 경위

조합원 실태조사 및 명부 현행화를 위해 지도과 직원 A가 13개 지사무소 실태조사 담당자들에게 전체 조합원 개인정보가 포함된 엑셀파일을 사내 전산망으로 일괄 발송하여, 유가공공장 조합원 실태조사 담당자 B가 해당 파일을 수령하였고, 이후 조합 비상임이사 D가 지사무소 직원 C에게 안부 인사 목적으로 조합원 명부를 요청, C가 B로부터 사내 전산망으로 해당 파일을 받은 후 이를 출력하여 D에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비상임이사 및 조합원은 성명·주소만 접근가능

#### 다. 개인정보의 취급·운영 관련 사실관계

#### 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13개 지사무소에 전체 조합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소속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 발송하였으며, 접근권한이 없는 직원에게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2. 예정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4. 28.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3. 5. 4.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완료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Ⅲ. 위법성 판단

##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이하 '고시')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위법성 판단

#### 가.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전체 조합원 개인정보를 소속별로 구분하지 않고 13개 지사무소에 일괄 발송하고, 해당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6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 Ⅳ. 처분 및 결정

##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9조 위반에 대해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보호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
---	-----	-------	-----	-----	------	-----	----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ਸਦਲਸ	근기 답꼬푼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자.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 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6호	600	1,200	2,400	

####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 및 [별표2] 가중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과태료의 감경)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사전통지 전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하고, 조사 기간 중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료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별표1]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300만 원을 감경한다.

# < 과태료의 감경기준(제7조 관련) >

기준	감경사유	감경비율
조사 협조. 자진 시정 등	1. 과태료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기준금액의 50% 이내
	2.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기준금액의 40% 이내

####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감경을 거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과태료 처분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위반조항	처분 조항	기준 금액(A) 가중액 감경액 : (B) (C) :		최종액(D) D=(A+B-C)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75조제2항제6호	600	-	300	300

## V.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 2023년 6월 27일

위원장 지성우 (서명)

위 원 강정화 (서명)

위 원 염흥열 (서명)